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본 조례는 1996. 6. 24.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운영상 현실과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며 본 조례 제3조(결정사항) 중 근거법령의 폐지 등으로 인한 관련 내용 삭제와 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갈음케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본 조례를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(제2조제3항 관련)

○ 성주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화

- "당연직 위원은 각 실·과·소장 10명 이내로 하고"를 "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"로 개정

□ 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변경 (제4조(회의) 관련)

○ 위원회 개최일을 실제 운영일과 일치

- "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" 를 "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"로 개정

□ 위원회 결정사항의 조정 (제3조(결정사항) 관련)

○ 근거 법령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삭제

-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(제6호)
-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(제7호)
-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(제8호)
-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(제13호)

○ 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같음케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본 조례를 운영코자 결정사항 신설

⇒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(제19호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.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.

※ 『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』 1부 : 붙임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"를 "성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"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"각 실과소장 10명 이내로"를 "각 실과소장으로"로 한다.

제3조제6호 내지 제8호, 제13호를 삭제한다

동조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19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
20.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"매주 화요일에"를 "매주 목요일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·과·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공무원 및 하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④ (생략)	제2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각 실·과·소장으로 ④ (현행과 같음)
제3조(결정사항) 1. ~ 5. (생략) 6.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.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8.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. ~ 12. (생략) 13.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. ~ 18. (생략) 〈신 설〉 19.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	제3조(결정사항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삭제 7. 삭제 8. 삭제 9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삭제 14. ~ 18. (현행과 같음) 19.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20.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~ ⑧ (생략)	제4조(회의) ①..... 목요일 ② ~ ⑧ (현행과 같음)